

###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0. 1. 22. 13시 경	상담유형	[ ] 방문 [x]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권	생년월일	19 . . .
	소속/직위(직급)	팀/ ( 급)	연락처	064-7 -

상담 내용

- 외부업체로부터 설 선물 택배가 도착했는데 반환 시 처리절차 문의

상담 결과

-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를 안내함.

제3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020년 1월 22일

행동강령책임관

김미정

(서명 또는 인)

###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0. 3. 10. 10시 경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사내메신저)	
상.담 요청자	성명	이	생년월일	19 . . .
	소속/직위(직급)	팀/ ( 급)	연락처	064-7 -

#### 상담 내용

- 위원으로 서면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외부 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

#### 상담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및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에 따르면 아래와 같으므로 자격시험 문제 출제위원 활동은 사전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년 3 월 10 일

행동강령책임관

김 미 정

